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환경과)

의안번호	제200호
제 출 자	정윤주 의원 외 8명(2023. 9. 26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,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지원사업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악취방지법」 등

나. 협조부서 : 환경과, 청소행정과

다. 예산조치 : 필요시 편성

라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2023. 10. 1. 의견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7¹⁾에 따라 악취검사, 기술진단, 악취방지시설 및 저감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.

○ 조문별 주용내용은,

- 안 제1조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조는 “악취”, “생활악취”, “사업자”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,
- 안 제3조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으며,

1) 제16조의7(생활악취 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(이하 “생활악취”라 한다)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,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.

- 안 제6조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,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, 정화조 배수조에 대한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등을 **법 제3조²⁾**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 및 관리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.

2) 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